

2026년도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해양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7일
해양경찰청장

1. 관련 근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23-2호)

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및 대상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1차 연장: 1년 / 2차 연장: 2년
- (연장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7. 8.(수) 09:00 ~ 8. 4.(화) 18:00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메일 제출
※ 해양경찰청 - 새소식/알림 - 고시공고 - 공고 확인

4. 1차 연장

1) 연장 요건

○ (공공성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나.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 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사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제외 사유)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정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지정된 혁신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물품식별번호 기준)

구분	항목	세부사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지정된 혁신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 간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동일하면서 적용기술(특허, 실용신안)이 일부 동일한 경우에도 제외

2) 추진 절차

구 분	주 체	세부 내용	일정
연 장 신 청	신 청 자	관련서류 우편 또는 메일 제출	7.8~8.4
사 전 검 토	해 경 청	신청서·첨부서류의 미비점 등 보완	8월
서 류 평 가	해 경 청	신청제품의 연장 자격 평가	9월
심 의·의 결	재 경 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의결	9~11월

3)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세부 서류			필수 여부	비고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필수	서식 1
2	지정기간 연장기준 자체 평가서			필수	서식 2
3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필수	서식 3
4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4-1 ^{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서식 4
		4-2 ^{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4-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해양경찰청장 시상·표창	해당 시	-
		4-4 ^{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서식 5
5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뒷면 포함)			필수	-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수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기본 지정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혁신제품이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5. 문의 및 제출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032-835-2408 dada3446@korea.kr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장비기획과 연구개발계

- [서식]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도첨부)
2. 지정기간 연장기준 자체 평가서(별도첨부)
3.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도첨부)
4. 신청자격 증빙서류(별도첨부)